

#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2월 2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3. 9) 상정
-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3. 9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윤 인 상)

### □ 제안이유

- 소송의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소송수행 난이도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,
-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송수행에 소홀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며, 소송수행 유공자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포상금 지급대상 중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70 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2조제1항제2호).
- 나. 소송사건 종결시에 지급하던 포상금을 각 심급별로 지급하도록 변경

함(안 제4조).

다. 소송내용이 단순한 사건은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고, 사건 당 50만원으로 규정한 지급액을 30만원으로 변경하며, 가처분신청사건 및 소액사건 지급액을 10만원으로 하여 지급액을 세분화함(안 제5조).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속기록 참고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특이사항 없음	○ 특이사항 없음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

○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#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부천시장(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”을 “부천시장(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소송수행자”를 “소송수행자(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단서 중 “경우에 한다”를 “경우로 한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원고청구의 전부를”을 “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사건”을 “해당 소송사건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결정한다. 다만,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(對比)하여 결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포상금 지급액)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준비서면(답변서를 포함한다) 등의 제출과 변론수행의 횟수를 합하여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.

1. 행정소송(본안): 1사건 당 30만원 이내
2. 민사소송(본안): 1사건 당 30만원 이내
3. 가처분신청사건(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)과 「소액사건 심판법」에 따른 소액사건: 1사건 당 10만원 이내

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포상금 지급신청)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종전의 제6조)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“자중”을 “공무원 중”으로 하며,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“한다”를 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

“별지”

